



# 【검토보고서】

2019.4.16.(화)  
제304회 임시회

##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김유연】



#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제안경과

- 제안자 : 양주시장(체육청소년과장)
- 제출일 : 2019년 3월 9일

## 2. 제안이유

- 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종목별 특성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 나.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가정을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며,
- 다. 신규 건립 체육시설과 사용료 미 부과 체육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 라. 용어의 불명확으로 인한 조례 적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일부 추가하거나 수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에 “전용사용” 및 “전용사용료”, “이용” 및 “이용료”의 정의를 신규 추가하고, 기존 “체육경기의 행사”를 “체육행사” 및 “체육이외의 행사”로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사용료 감면 대상에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5세 이하인 가정으로 그 부모와 자녀를 추가함(안 제12조)
- 다. 신규 건립 체육시설인 양주체육복지센터와 양주스마트시티복합센터 및 사용료 미 부과 체육시설 중 덕정탁구전용구장과 옥정배수지 체육공원을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에 추가함(안 별표 1)

- 라. 사용료를 최근 3년간(2015~2017년) 평균 수지율 43.5%에서 55%로 향상되도록 현실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2)
- 마. 배드민턴장, 탁구장, 인공암벽장의 경우 시설의 대관예약 없이 시설의 일부를 개인별로 월회원료 또는 1회 이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므로, 일상적인 개인 이용 시 적용하는 체육경기 전용사용료(대관료)를 삭제하고, 대회 등 체육행사를 위한 시설 대관 시 적용하는 전용사용료(대관료)를 신설함 (일반 대관료 삭제, 행사 대관료 신설) (안 별표 2)
- 바.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료가 종전에는 성인 요금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청소년 및 어린이 이용 시 적절한 요금 적용을 위하여 청소년, 어린이 요금을 신설함(안 별표2)
- 사. 사용료 외에 축구장, 야구장의 야간 조명사용료 부과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다목적체육관 부속시설(음향, 기자재 등) 사용료를 신설함(안 별표2)
- 아. 관외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1.5배 가산 적용기준 강화(안 별표2)
  - 축구 등 단체종목의 경우 종전에는 전체 인원 중 관외거주자가 50% 이상일 때 사용료를 1.5배 가산하였으나, 관내주민 보호를 위하여 전체 인원 중 관외거주자가 30%초과 할 때부터 1.5배 가산하는 것으로 변경함.
  - 종전에는 체육시설 사용료만 관외거주자에 대하여 1.5배 가산하였으나, 수영 등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도 관외거주자에 대하여 1.5배 가산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비용추계

- 2019년 시행 이후 5년간 추가 비용발생액 : 2,293,201천원

· 세출(체육시설 관리운영비) 증가분 : 19,640,370천원

· 세입(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증가분 : 17,347,169천원

나. 입법예고 : 2019. 3. 7. ~ 3. 26.(20일간)

5. 검토의견

가. 조례개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기존운영 공공체육시설 중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시설과 현재 신축 예정인 시설을 사용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용 사용료, 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조정을 통해 운영수지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 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나. 주요내용

### 1)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 전용사용, 이용의 구분

- 현행 사용료와 이용료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사용, 전용사용, 이용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의 조항에서 '전용사용', '이용'을 별도로 정의하였음

#### [용어정의]

- 전용사용 :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
- 이용 :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

#### ○ 체육행사, 체육이외의 행사 정의

- 또한 조례안에서 '체육경기'와 '체육행사 및 체육경기의 행사'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체육행사를 별도로 정의(제2조제11호)하였으나, 실질적인 조례의 운영에 있어 '체육행사'와 '체육이외의 행사'의 구분은 실익이 없고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향후 조례 개정시 '체육경기'와 '일반행사'로만 구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체육행사, 체육이외의 행사의 사용료는 동일함

#### [용어정의]

- 체육경기 : 체육동호인이나 단체 등이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경기 등
- 체육행사 : 체육과 관련하여 단체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 체육이외의 행사 : 체육행사 외 문화행사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신 설>	<p>3. “<u>전용사용</u>”이라 함은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기간(시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u>전용사용료</u>”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4. “<u>이용</u>”이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u>이용료</u>”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8. “ <u>체육경기</u> ”라 함은 체육동호인이나 단체 등이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경기나 체력단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 <u>체육경기의외 행사</u> ”라 함은 체육경기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10. (현행 제8호)----- ----- ----- 말한다.
<신 설>	11. “ <u>체육행사</u> ”라 함은 체육과 관련하여 단체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하며, “ <u>체육이외 행사</u> ”라 함은 “ <u>체육행사</u> ”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 2)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부과대상 추가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1])

- 기존운영시설 추가 : 덕정탁구전용구장, 옥정배수지 체육공원(2개소)
  - 기존 개별단체에 위탁하여 자체운영을 해왔으나 2019년부터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부과대상에 추가
- 신규시설 : 양주체육복지센터, 양주스마트시티 복합센터 (2개소)
  - 신규 조성(예정)에 따른 부과대상 추가로 ‘인공암벽장’, ‘서부권스포츠 센터’는 광적생활체육공원 내 건립시설로 조례[별표]상 별도 표기 없이 포함

###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지번)	비 고
1	고덕체육공원	양주시 고덕로 187-55(덕계동)	
2	덕정체육돔구장	양주시 화합로 1457-188(고암동)	
3	신천체육공원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25-15	
4	장흥생활체육공원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501번길 100-16	
5	고읍축구장	양주시 광사동 714	
6	광적생활체육공원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618번길 303	
7	백석생활체육공원	양주시 백석읍 백은로 185	
8	삼승생활체육공원	양주시 삼승동 625-5	
9	양주국민체육센터	양주시 고읍남로 172(광사동)	
10	양주실내체육관	양주시 삼승로129번길 139-14(삼승동)	
11	옥정체육공원	양주시 회천로 281(고암동)	
<b>12</b>	<b>덕정탁구전용구장</b>	<b>양주시 고암길 111(고암동)</b>	<b>기존시설추가</b>
<b>13</b>	<b>옥정배수지 체육공원</b>	<b>고암동 493-90</b>	<b>기존시설추가</b>
<b>14</b>	<b>양주체육복지센터</b>	<b>양주시 화합로1426번길 90(덕정동)</b>	<b>신규시설추가</b>
<b>15</b>	<b>양주스마트시티복합센터</b>	<b>양주시 옥정동 98</b>	<b>신규시설추가</b>

### 3) 감면 대상 추가 (안 제12조)

#### ○ 다자녀가구 감면대상 포함

-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5세 이하인 가정으로 그 부모와 자녀를 감면대상에 포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p> <p>2. 어린이, <u>군경</u>, 경로우대자,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에 의한 수급자, <u>한부모 가족지원법</u>에 따른 한 부모 가족, <u>장애인복지법</u>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u>양주시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u>이용료</u>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만 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p>	<p>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2. ----, <u>군인</u>, -----,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 「<u>한부모가족지원법</u>」----- ----- 「<u>장애인복지법</u>」----- 「<u>양주시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에----- 이 <u>이용료와</u> ----- -----</p>
<p>〈<u>신 설</u>〉</p>	<p>5. 「<u>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u>」 제2조 제3호에 따른 출산과 입양으로 2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5세 이하인 가정으로 그 부모와 자녀</p>

4) 수지율 개선을 위한 사용료 현실화(별표2)

■ 사용료 조정 (참고자료 1)

- 2018년 12월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및 감면을 산정 연구 용역’ 결과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한 실외체육시설의 최근 3년간(2015~2017) 평균 수지율은 야구장 47.2%, 축구장 41.2%, 테니스장 48.5%로 전체적으로 50% 이하로 조사됨에 따라, 기존운영시설과 조성중인 시설의 전용사용료, 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할 사항임

## 【체육시설별 수지비율(2018.6.30.기준)】

- 용역결과보고서 발취 -

(단위 : 천원)

구 분	수지 비율 (A/B)	수입금액(A)			지출금액(B)					
		소계	구장수입	기타 수입	소계	인건비	경비	자산 취득비		
계	38.6%	166,024	162,505	3,519	430,487	240,620	<b>182,859</b>	7,008		
체 육 시 설  (수 영 장 제 외 )	야구장	소계	37.3%	24,763	11,489	0	66,438	34,620	31,818	0
		성인	53.5%	11,489	11,489	0	21,487	9,618	11,869	0
		리틀	22.3%	3,299	3,299		14,761	9,618	5,143	0
		장흥	33.0%	9,975	7,768	2,207	30,190	15,384	14,806	0
축구장	소계	42.1%	90,230	88,918	1,312	214,424	116,083	96,858	7,008	
	고덕	21.8%	16,318	15,829	489	74,691	38,473	36,218	0	
	고읍	51.5%	17,994	17,929	65	34,951	25,671	9,280	0	
	광적	53.3%	13,476	12,974	502	25,292	14,102	11,190	0	
	백석	49.7%	15,726	15,726	0	31,660	9,618	15,034	7,008	
	신천	43.3%	10,026	9,770	256	23,165	12,835	10,330	0	
	장흥	55.3%	16,690	16,690	0	30,190	15,384	14,806	0	
테니스장	소계	31.2%	30,817	30,817	0	98,795	62,888	35,907	0	
	광적	11.2%	2,844	2,844	0	25,292	14,102	11,190	0	
	백석	21.1%	3,616	3,616	0	17,135	9,618	7,517	0	
	삼송	64.3%	21,335	21,335	0	33,193	26,333	6,860	0	
	신천	13.0%	3,022	3,022	0	23,175	12,835	10,340	0	
배드민턴장	덕정동	39.8%	20,214	20,214	0	50,830	26,671	13,829	0	

### ○ 전용사용료 조정

- 전용사용료(대관료)는 축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을 인상하였으며, 테니스장은 인하,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육상트랙은 변동 없음.
  - 축구장, 야구장, 인공암벽장 등은 연구용역결과 제시된 금액으로 조정하였고
  - 테니스장은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따라 인근 시군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고려하여 인하하였음.
- 탁구장, 배드민턴장의 체육경기 1면당 전용사용료를 삭제하였으며, 테니스장은 개인이용료를 삭제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도록 사용료 징수 방식에 변화를 주었음.
- 현행 ‘관외거주자 50%이상일 경우 50%를 가산’하는 규정을 ‘관외거주자 30%이상일 경우 50%가산’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관내·외 사용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 측면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전용사용료(대관료) 조정 안]

(단위 : 원)

종 목	구 분	체 육 경 기 (2시간 기준)				체육경기의 행사 (4시간 기준) ⇒ 체육행사 및 체육이의 행사(4시간 기준)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축 구 장	현 행	30,000	45,000	45,000	60,000	150,000	225,000	225,000	337,000
	조 정	40,000	60,000	60,000	80,000	150,000	230,000	230,000	340,000
	증 감 액	10,000	15,000	15,000	20,000	-	5,000	5,000	3,000
야 구 장	현 행	40,000	60,000	60,000	80,000	150,000	225,000	225,000	337,000
	조 정	45,000	70,000	70,000	90,000	150,000	230,000	230,000	340,000
	증 감 액	5,000	10,000	10,000	10,000	-	5,000	5,000	3,000
리 야 구 장	현 행	20,000	30,000	30,000	40,000	75,000	112,500	112,500	168,500
	조 정	30,000	45,000	45,000	60,000	100,000	160,000	160,000	240,000
	증 감 액	10,000	15,000	15,000	20,000	25,000	47,500	47,500	71,500
테 니 스 장 ( 1 면 )	현 행	15,000	18,000	18,000	27,000	-	-	-	-
	조 정	10,000	12,000	12,000	14,000	20,000	24,000	24,000	28,000
	증 감 액	-5,000	-6,000	-6,000	-13,000	-	-	-	-
살내테니스장(1면)	신 설	20,000	20,000	20,000	20,000	40,000	40,000	40,000	40,000
배 드 민 턴 장 ( 1 면 )	현 행	4,000	6,000	6,000	8,000	8,000	10,000	10,000	12,000
	조 정	4,000	6,000	6,000	8,000	12,000	16,000	16,000	20,000
	증 감 액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000	6,000	6,000	8,000
탁 구 장 ( 1 면 )	현 행	4,000	6,000	6,000	8,000	-	-	-	-
	조 정	4,000	6,000	6,000	8,000	12,000	16,000	16,000	20,000
	증 감 액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
인 공 암 벽 장	신 설	-	-	-	-	70,000	90,000	90,000	120,000
수 영 장	현 행 ( 동 결 )	200,000	300,000	300,000	450,000	800,000	1,200,000	1,200,000	1,800,000
다 목 적 체육관	현 행 ( 동 결 )	30,000	45,000	45,000	67,500	220,000	330,000	330,000	495,000
육 상 트 랙	현 행 ( 동 결 )	10,000	15,000	20,000	30,000	80,000	120,000	120,000	160,000

### (공통사항)

-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 전용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별도 징수한다.
- 시설사용자중 관외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일 경우 ⇒ 30% 초과일 경우** 100분에 50을 가산한다.
- 초과사용시 초과 시간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 이용료 조정

- 배드민턴장, 탁구장, 헬스장(성인)의 개인 이용료를 인상하였으며, 테니스장 개인이용료는 삭제(전용사용료로 징수)하였음.
- 대부분의 이용료는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조정금액을 반영한 사항임.

## [이용료 (개인) 조정안]

(단위 : 원)

구 분		월 회 원		1회 이용		월 회 원 기준 시간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테니스장	현행	23,000	27,000	2,500	3,000	1일 1회 2시간	
	조정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배드민턴장 · 탁구장	현행	15,000	15,000	2,000	2,000	1일 1회 2시간	
	조정	20,000	20,000	동결	동결		
	증감액	5,000	5,000	-	-		
	청소년 (신설)	15,000	15,000	1,500	1,500		
	어린이 (신설)	10,000	10,000	1,000	1,000		
인공암벽장 (신설)	성인	30,000	35,000	2,000	2,500	1일 1회 2시간	
	청소년	20,000	25,000	1,500	2,000		
	어린이	15,000	18,000	1,000	1,500		
수영장 (동결)	성인	60,000	60,000	4,000	4,000	1일 1회 1시간	
	청소년	50,000	50,000	3,500	3,500		
	어린이	45,000	45,000	3,000	3,000		
헬스장	성인	현행	20,000	20,000	3,000	3,000	1일 1회 1시간
		인상	25,000	25,000	동결	동결	
		증감	5,000	5,000	-	-	
	청소년	15,000	15,000	2,500	2,500		
	어린이	15,000	15,000	2,500	2,500		
다목적 체육관 (동결)	성인	-	-	4,000	4,000	-	
	청소년	-	-	3,500	3,500		
	어린이	-	-	3,000	3,000		
<b>(공통사항)</b>							
○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징수한다.							
○ 관외거주자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에 50을 가산한다. <b>(강습 프로그램 수강료 포함)</b>							
○ 초과사용시 초과 시간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각 시설의 1회 이용 시간은 1일 1회 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b>양주국민체육센터 ⇒ 양주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센터에서 2개 종목 이상을 동시 수강하거나 3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b> 합계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b>다목적체육관의 월회원료 등 이용료는 시설규모,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준용할 수 있다.</b>							

### ○ 부속시설 사용료 신설

- 축구장·야구장의 조명탑, 음향설비, 바닥보호매트, 접의자 사용료를 신설하였음

### [부속시설 사용료 조정안]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전기·조명 등	기본료(3,000원)+(수용요금×사용일수/30)+실제사용전기 관허요금 등의 방식에 의해 산출된 실사용요금			전가조명등 사용료는 별도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시설에 한하여 부과한다.
축구장야구장 라이트시설(조명탑) (1시간 기준)	2021년 5,000원	2022년 10,000원	2023년 실 사용료	(신설) 2021년부터 부과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축구장·야구장 전광판	1일 기본료+ (전광판주변압기용량×기본요금×사용일수 / 30)+ 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등의 방식에 의해 산출된 실 사용요금			(신설)
음향설비	10,000원/1회당			(신설)
바닥보호 매트	30,000원/1회당			(신설)
점의자	1개당 500원			(신설)
사물함 (월사용료)	사물함: 3,000원			
	사물함 열쇠 분실료: 15,000원			

#### 5) 예산검토

##### ○ 세입세출 증가 내역

- 조례개정에 따른 세입증가는 2019년(8개월) 2,458,583천원, 2020년 3,687,873천원, 신규시설 운영에 따른 세출증가는 2019년(8개월) 2,726,706천원 2020년 4,150,576천원으로 예상되어
- 5년간 세입증가분은 17,347,169천원, 세출증가분은 19,640,370천원임.

## [비용추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비고
비용발생	268,123	462,703	491,318	520,576	550,481	2,293,201	
세입증가분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2,458,583	3,687,873	3,710,723	3,733,571	3,756,419	17,347,169	세외수입
세출증가분							
신규 체육시설 관리운영비	2,726,706	4,150,576	4,202,041	4,254,147	4,306,900	19,640,370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726,706	4,150,576	4,202,041	4,254,147	4,306,900	19,640,370
	지방세수입	268,123	462,703	491,318	520,576	550,481	2,293,201
	세외수입	2,458,583	3,687,873	3,710,723	3,733,571	3,756,419	17,347,169

## [세출 증가내역]

(단 위 : 천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시행 전 (A)	소계	1,714,629	2,603,837	2,636,124	2,668,814	2,701,908	12,325,312
	실외체육시설	726,992	1,104,011	1,117,701	1,131,562	1,145,594	5,225,860
	국민체육센터	987,637	1,499,826	1,518,423	1,537,252	1,556,314	7,099,452
시행 후 (B)	소계	4,441,335	6,754,413	6,838,165	6,922,961	7,008,808	31,965,682
	실외체육시설	726,992	1,104,011	1,117,701	1,131,562	1,145,594	5,225,860
	국민체육센터	987,637	1,499,826	1,518,423	1,537,252	1,556,314	7,099,452
	인공암벽장	20,352	40,705	41,209	41,720	42,238	186,224
	덕정탁구전용구장	10,046	15,256	15,446	15,637	15,831	72,216
	옥정배수지 체육공원	29,688	45,085	45,644	46,210	46,783	213,410
	양주체육복지센터	987,637	1,499,826	1,518,423	1,537,252	1,556,314	7,099,452
	서부권스포츠클럽센터	691,346	1,049,878	1,062,896	1,076,076	1,089,420	4,969,616
	양주스마트시티 복합센터	987,637	1,499,826	1,518,423	1,537,252	1,556,314	7,099,452
세출증가액(B-A)	2,726,706	4,150,576	4,202,041	4,254,147	4,306,900	19,640,370	

## [세입증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시행 전 (A)	소계	1,074,447	1,611,673	1,611,673	1,611,673	1,611,673	7,521,139
	실외체육시설	244,159	366,240	366,240	366,240	366,240	1,709,119
	국민체육센터	830,288	1,245,433	1,245,433	1,245,433	1,245,433	5,812,020
시행 후 (B)	소계	3,533,030	5,299,546	5,322,396	5,345,244	5,368,092	24,868,308
	실외체육시설	391,402	587,104	609,954	632,802	655,650	2,876,912
	국민체육센터	841,026	1,261,539	1,261,539	1,261,539	1,261,539	5,887,182
	인공암벽장	5,280	7,920	7,920	7,920	7,920	36,960
	덕정탁구전용구장	5,280	7,920	7,920	7,920	7,920	36,960
	옥정배수지 체육공원	19,272	28,908	28,908	28,908	28,908	134,904
	양주체육복지센터	841,026	1,261,539	1,261,539	1,261,539	1,261,539	5,887,182
	서부권스포츠클럽센터	588,718	883,077	883,077	883,077	883,077	4,121,026
	양주스마트시티 복합센터	841,026	1,261,539	1,261,539	1,261,539	1,261,539	5,887,182
세입증가액(B-A)		2,458,583	3,687,873	3,710,723	3,733,571	3,756,419	17,347,169

### ○ 운영수지율 분석

- 조례개정을 통해 종목별 사용료의 17% ~ 50% 가량을 인상할 경우 운영수지율은 50%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됨

구 분	최근 3년 평균수입(천원) (2015~2017)	최근 3년 평균비용(천원) (2015~2017)	최근 3년 평균수지율	현행 사용료(원)	인상 후 사용료(원)	인상률	인상시 예상수입	예상 수지율
계	319,006	796,538	40.0%			-	416,810	52.3%
축구장	229,218	561,822	40.8%	45,000	60,000	33%	304,859	54.3%
야구장 계	55,276	160,956	34.3%	-	-	-	66,050	41.0%
일반야구장	51,103	115,994	44.1%	60,000	70,000	17%	59,791	51.5%
리틀야구장	4,173	44,962	9.3%	30,000	45,000	50%	6,260	13.9%
배드민턴장 (월회원료기준)	34,512	73,760	46.8%	15,000	20,000	33%	45,901	62.2%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2014.1.27. 전면개정 이후 5년 이상 동결되었던 공공체육 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고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용어정의 명확화, 감면대상 추가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양주시 공공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제외)의 운영수지율은 2016년 48.1%, 2017년 42.2%, 2018년 38.6%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경기도 내 지자체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비교하였을 때 양주시의 사용료는 축구장 43%, 야구장 30%, 배드민턴장은 67%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바 운영수지율을 높이고 신규조성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향후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요금 조정 방향은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통해 양주시의 재정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